



# 다중화장치등의 사용기준

한국데이터통신

한국데이터통신은 다중화장치 등의 사용기준을 제정,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정보통신 회선사용의 효율제고를 위해 동기준의 제정을 민간업계측이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3차회선사용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통신사업자측에 기준제정에 대한 기본방침을 시달한데서 비롯되었다. 당협회는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신사업자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 검토회의를 가졌고 여기에서 수렴된 업계의견을 통신사업자에게 건의했다. 민간업계는 동기준이 산업경제 발전 측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며 통신사업자측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다중화장치등에 대한 정의, 접속사용회선의 속도제한, 사용의 범위, 신고의무규정등에 대해서도 재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통신사업자는 민간업계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 동기준을 확정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민간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편집자 註〉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2조 제3호 및 제73조 제3항에 의거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 등을 접속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선”이라 함은 특정통신회선과 정보교환회선을 말합니다.
2. “다중화장치등”이라 함은 몇개의 데이터단말장치(터미널류, 컴퓨터등의 데이터처리장치)에서 발생한 디지털정보를 하나의 공동채널로 이용하여 결합된 형태의 신호로 만들어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합니다.
3. “정보검색”이라 함은 수집, 정리, 보관된 정보를 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정보처리”라 함은 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접속사용회선)** 다중화장치등을 접속사용할 수 있는 회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통신회선 : 전화급 회선과 9,600BPS 이하인 전

화급 이외의 회선

## 2. 정보교환회선

**제4조(사용의 범위)** 다중화장치등을 접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검색이나 정보처리를 위하여 다중화장치등을 특정통신회선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다중화장치등을 정보교환회선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조(사용 및 변경신고)** ① 다중화장치등을 회선과 접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선의 사용청약시에 품명, 수량, 용량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선과 접속하여 사용중인 다중화장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기준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다중화장치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기기 비관세장벽 대폭 철폐키로

## - 통상정책 관계장관회의 -

정부는 지난달 17일 통상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입자유화를 실질적으로 막아온 비관세장벽을 연내에 대폭 철폐키로 했다. 특히 통신기기의 형식승인완화, 외국유명 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무선통신기자재의 수입을 실수요자 이외에도 확대키로 했다.

## 1.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가. 현행: 전화기, 전신기등(9개)에 대한 형식 승인

### 나. 개선방향

- 시험검사 방법, 절차등 표준시험방법 제정 및 개정
- 1단계: 전화기, 패시밀리, 키폰전화시스템, 모뎀, 코드리스전화기등 5개(2/4분기중)
- 2단계: 텔리텍스 구내교환기, 신용카드조회기, 인쇄 전신기등 4개(3/4분기중)

## 2. 외국 유명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가. 현행: 외국유명기관의 인증불허

### 나. 개선방향

90년부터 각국의 유명검사기관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우리가 지정한 스펙에 따른 이들의 시험성적서를 인정(2/4분기중 개정안 마련, 연내에 개정)

## 3. 무선통신기자재의 수입 신청범위 확대

가. 현행: 무선통신기자재(18개 품목)의 수입을 위한 형식 검정신청을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

### 나. 개선방향

실수요자외에 일반수입업자, 외국상사의 국내대리인 등에게도 형식 검정신청과 수입허용(상반기에 형식 검정규칙 개정)

무선통신기자재의 수입을 위한 형식 검정은 갑종과 을종으로 하는데 그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갑종 형식 검정대상기기

- 주파수 측정장치
- 선박의 구명정용 휴대 무선 전신기기
- 무선방위 측정기
-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중 F<sub>3</sub>E, G<sub>3</sub>E 전파를 사용해 양방형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 경보자동전화 장치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 28MHz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축과 대전파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다만 육상국(해안국을 제외)·실험국·실용화 시험국 및 아마추어국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
- 27MHz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 푸롯팅 장치

#### 2. 을종 형식 검정대상

- 기상원조국의 용에 공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보트의 기기
- 라디오 부이의 기기
- F<sub>3</sub>E 및 G<sub>3</sub>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기기(갑종에 속하는 것 제외)
- 허가를 요하는 고주파 이용설비중 의료용설비의 기기
- 28MHz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축파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육상국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해안국을 제외)
- 무선설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기타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기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情報化社會 기반조성계획

## 1. 정보통신의 활성화 촉진

### 기본방침

- 기존통신망을 활용한 비음성통신개발
- 다양한 서비스개발 보급
- 전기통신시설의 부가가치 증대

### 추진계획

#### 가. 전화, 텔레ックス, 패킷 교환망간의 상호연동화 추진

- 개발시험 : '89년～'90년
- 연동시험 : '90년～'91년

#### 나. 고속회선교환망 구축 운용

- 시범망 구축 : '88년
- 서비스 제공 : '89년부터

#### 다. PC통신망 구축 운용

- 접속장치 및 기본형단말기 개발 착수 : '89년
-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련기술 개발 : '89～'90년
- PC통신망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설치 : '91년부터

#### 라. 종합정보통신망(ISDN) 시범사업 추진

- 1) 고속 FAX 서비스 시범운용 : '89년  
○ TDX교환기에 고속 팩시밀리 접속연결
- 2) 기존전화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 시범운용 : '89년  
○ 정지화상 전화서비스  
○ FAX전화 서비스  
○ PC-FAX 서비스
- 3) 교육용 데이터베이스 시범운용 : '89년  
○ 대상 : 초, 중, 고 각 1개교
- 4) 공중용 PC개발 시범운용 : '89년  
○ 대상 : 생활정보 등

### 마. 새로운 서비스 개발보급

- 1) 종합음성정보(오피오텍스) 서비스 상용화 : '89년  
○ 대상 : 은행정보, 증권정보, 교통정보 등
- 2) 원격자동검침 서비스 상용시험 : '89년  
○ 대상 : 수도, 전기, 가스 등
- 3) 국제고속부호급 전용회선서비스 상용화 : '89년

## 2. 전기통신홍보관 설치

- 기준전화국 활용(광주) : 1989년
- 홍보관신설(대구, 대전, 제주) : 1989～1992년

## 3. 전기통신미래관 건립추진

- 위치 및 규모 : 독립기념관 서곡 4,500평
- 부지사용계약체결 및 설계 : 1989년
- 개관 : 1992. 12월

## 4. 정보문화센타 사업지원

- 전기통신홍보기관으로 육성

## 5. 정보이용의 활성화 촉진

- 전화를 이용한 정보통신단말기 개발
  - 초, 중, 고교 PC 보급
  - 단말기 개발
- 행정전산통신망 구성지원 : 5,857회선
- 민원사무 전산화 시범운용 : 1989년
  - 시범지역 : 대전통화권(대전, 서대전, 신탄진)

## 6. 국제산업전람회 통신 테마관 확보추진

- 규모 : 약 2,000평(건물 1,000평)
- 추진조직 확보
- 종합추진계획 수립 ♣